

韓國產業의 輸入代替 對 輸出의 相對的 誘因率 構造

南 宗 鉉

▷ 目 次 ◁

- I. 序 論
- II. 產業別 誘因率 推定方法과 資料
- III. 相對的 實効誘因率 構造와 評價
- I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2次 世界大戰 이후 지난 30餘年間 開發途上國이 採擇해 온 經濟開發政策의 成果를 比較分析한 研究結果에 의하면 대체로 輸出指向의 즉, 對外指向的 成長政策이 輸入代替를 통한 成長政策보다 훨씬 優越하였다는 것은 거의 立證된 事實이라고 하겠다¹⁾.

對外指向的 政策의 相對的 優越性을 설명하

는 주요한 이유로는 먼저 對外指向的 政策下에서는 產業化의 初期段階에서 비교적 그 나라에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이 우선적으로 開發될 수 있기 때문에 效率의 資源配分을 기할 수 있다는 利點, 그리고 企業들이 國際市場을 相對로 生產・販賣함으로써 規模經濟를 최대한 活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競爭을 통하여 生產技術 및 經營의合理化 내지는向上을 계속 追求하게 된다는 利點 등을 들 수 있다. 더우기 輸入代替를 위한 支援政策은 대체로 產業間에 差等의으로 適用되는 데 반해, 輸出指向政策에 의한 支援은 모든 產業間に 비교적 中立의으로 適用되어 價格歪曲에 따른 經濟費用이 相對的으로 적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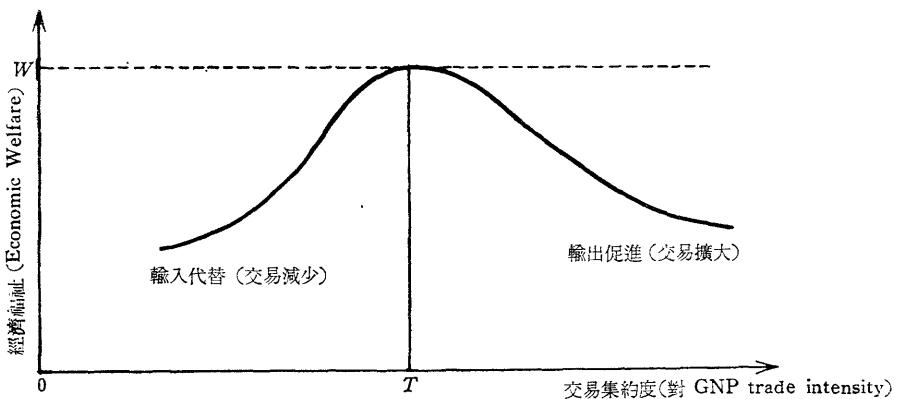
그리나 輸出指向政策의 相對的 優越性이 곧 그 絶對的 優越性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生產・分配活動이 外部經濟와 不確實性으로 인한 制約을 받지 않는다고 假定한다면 經濟福祉는 自由貿易下에서 가장 높아질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Little, Scitovsky and Scott(1970), Balassa and Associates(1971, forthcoming). Bhagwati and Krueger(1973), Bhagwati(1978) 그리고 Krueger (1980) 등 참조.

2) 輸出指向政策과 經濟成長의 相互聯關係에 대한 理論의 假說에 대해서는 Krueger(1980) 참조.

[圖 1] 經濟福祉와 交易集約度의 關係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輸出指向政策은 어디까지나 窮極的으로 自由貿易體制를 確立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이라는 點에서 그 理論的妥當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圖 1]은 한 나라의 經濟福祉水準과 交易集約度(對 GNP trade intensity)의 關係를 表示한 것인데, 縱軸은 經濟福祉水準을, 그리고 橫軸은 交易集約度를 각各 表示한다³⁾. [圖 1]에서 w^* 와 T^* 는 각各 自由貿易下에서 얻어지는 經濟福祉水準과 交易集約度를 나타내며, 自由貿易으로부터의 離脫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交易減少, 즉 T^* 로부터 左側離脫이고 다른 하나는 交易擴大 즉, T^* 이상으로 交易이 增加하는 右側離脫이다. 여기에서 前者는 輸入關稅, 數量規制, 輸入禁止 등과 같은 주

로 輸入代替政策에서 起起되며 後者는 輸出에 대한 直接補助 혹은 租稅減免 등의 惠澤을 賦與함으로써 交易이 最適水準(T^*) 以上으로 擴大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經濟開發政策은 지난 1960年代上半期를 前後하여 輸入代替로부터 輸出指向의 으로 轉換되었고 이를 계기로 급속한 貿易의 擴大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이다⁴⁾. 그러나 그동안 輸入自由化가 극히 不振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韓國은 실제로 1960年代 이후 輸出促進과 輸入代替를 동시에 추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70年代에 들어와서부터 적극적으로 推進되고 있는 重化學工業의 育成은 적어도 現在까지는 輸入代替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⁵⁾. 그 결과 1970年代末 現在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은 지극히 複雜한 構造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誘因策들이 複合的으로 全 產業과 個別產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把握한다는 것은 매우 中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研究가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本研究에서는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諸產業

3) [圖 1]은 第11次 太平洋貿易開發會議(1980年 9月 1~4日, KDI)에서 R. Findlay教授가 提示한 것이며 經濟福祉曲線이 T^* 를 中心으로 반드시 對稱이 될 필요는 없다.

4) 1964~78年間 輸出은 年平均 29.1%, GNP는 10.0%로 각各 上昇하였으며 對 GNP 輸出比重은 1964年 4.4%에서 1978年에는 41.8%로 上昇하였다. Nam (1980) 참조.

5) 最近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에 대해서는 Westphal and Kim(1978), Hong(1979), 그리고 Nam(1980) 참조. 특히 Nam(1980, p.22)에 의하면 1968~78年間 韓國의 全產業 平均 名目保護率이 14%에서 18%로 上昇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誘因策들⁶⁾ 輸入代替와 輸出에 어느 정도의 誘因率을 각각 賦與하고 있는가를 產業別로 計測評價함으로써 向後 產業誘因政策의合理化에 基礎資料를 提示하려는 데 그 主目的을 두고 있다⁷⁾.

本稿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Ⅱ節에서는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 그리고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을 產業別로 計測하는데 사용된 基本資料와 計測方法論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다. 그리고 Ⅲ節에서는 그 計測結果를 主要產業別, 貿易類型別, 그리고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 構造를 計測評價하고 있으며, 끝으로 Ⅳ節에서는 本研究의 結果를 要約하여 提示하고 있다.

II. 產業別 誘因率 推定 方法과 資料

1.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誘因率

일반적으로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은 國內販賣에 대한 名目保護率 以外에도 主要產業에 대한 租稅減免 및 金融支援 등 多樣한 政

6) 筆者는 이미 國內市場保護에 대한 產業誘因政策을 檢討하고 그에 따른 影響을 大分類 產業別로 計測하여 그 結果를 「韓國開發研究」(1980, 여름호)에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仔細한 說明을 省略함으로써 重複을 피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 둔다.

7) 重要產業의 個別育成法에 의한 支援은 주로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의 8項에 의한 租稅特例와 關稅法 28條에 의한 主要產業의 關稅減免 그리고 國民投資基金, 產業合理化資金, 外資導入 등과 같은 財政金融上의 支援, 그 밖에 行政支援과 工團造成 등을 通한 支援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府支援策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1970年代에 推進된 第3, 4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에서 소위 戰略產業으로 選擇된 重化學工業은 여러 가지 支援施策을 포함하고 있는 個別產業育成法에 의해서 保護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이 產業들은 대부분 아직 輸入代替產業의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支援政策에 의한 實質的인 保護度를 計量化하기에는 아직 充分하고 詳細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이에 대한 1次의 接近方法으로 國內市場保護의 제일 중요한 決定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 名目保護率을 計測하고 이에 의한 產業別 實效保護率을 推定함으로써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構造로 代用하고자 한다.

가. 名目保護率

名目保護率은 어떤 동일한(homogeneous) 品目에 대한 國內價格과 國際價格(border price)의 차이를 後者의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다. 本研究에서 名目保護率 推定의 對象品目으로는 1975年度 韓國銀行 產業聯關表의 392個 基本產業分類中 第1, 2次 產業部門인 318個 部門을 구성하는 總 1, 855個 品目中 가능한 한 各部門의 生產比重이 60% 이상이 되도록 總 537個의 代表品目을 選定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代表品目에 대해서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그리고 潛在關稅率을 推定하였으며 各品目的 名目保護率은 이 세 가지 候補 가운데 하나를 選擇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에 그 選擇 根據로는 各品目的 輸出入比重, 輸出入에 대한 數量規制의 有無와 方法, 國內 市場에서의 價格規制 有無, 그리고 그 商品의 特性 등이 參考資料로 이용되었

다⁸⁾. 이렇게 推定된 537個 品目의 名目保護率은 產業聯關表의 分類에 따라 318個部門으로 合成되었으며 이때에 加重值로는 各品目의 國際價格基準 國內販賣額이 사용되었다.

나. 輸入代替(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어떤 商品의 生產過程에서 交易可能한 中間財가 投入되는 경우, 國內生產者에게 實際로 賦與된 保護度는 諸產業誘因策이 生產者의 附加價值에 미치는 영향을 計測함으로써 推定해 볼 수 있다. 즉,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各投入·生產物에 대한 名目保護率과 產業聯關表에서 얻을 수 있는 國際價格基準 投入係數를 사용하여 推定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다음과 같은 假定이 必須의으로 도입된다. 즉,

(1) 中間投入物과 生產要素間의 代替彈力性이 零이고, (2) 生產規模의 變化에 關係없이 投入係數는 不變이며 (3) 輸出入에 대한 價格彈力性이 無限大라는 假定이 바로 그것이다. 또

8) 여기서 實績關稅率은 輸入額에 대한 關稅徵收額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이다며 이 때에 輸出用 原資材는 關稅還給이 許容되므로 輸入額은 內需用 輸入을 意味한다. 또한 潛在關稅率은 그 對象品目에 대한 國內·國際價格을 直接 比較하여 推定한 것으로 이는 關稅以外의 輸入規制 및 價格規制가 存在할 경우 가장 적합한 名目保護率의 指標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價格比較의 對象品目間에 質的인 差異가 存在할 경우 그 正確性이 問題가 된다. 結果的으로 537個品目的 名目保護率의 選定基準으로는 法定關稅率이 48個, 實績關稅率이 86個, 潛在關稅率이 202個品目에 각각 適用되었고, 나머지 201個品目에는 零의 名目保護率이 假定되었다.

9) 따라서 非交易財를 그 生產에 直·間接으로 投入된 交易可能한 中間財部分과 附加價值部分으로 나눌 때 Balassa方法에서는 이 附加價值를 最終製品의 直接附加價值에 포함하지 않으나, Corden方法에서는 이를 포함한다는 差異點이 있다.

10) 實效保護率의 推定方法과 그 制約性에 대해서는 Balassa(1971) 그리고 Balassa and Schydlowsky(1974) 등을 參照.

11) 여기서 國內價格基準 產業聯關表은 國際價格基準으로 換價하는 方法은 Kim(1978)i) 使用한 方法과 거의 同一한 方法에 依存하였다. 약간의 差異點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임.

한 產業聯關表의 產業分類中 電力, 가스, 用水 등 輸送費의 負擔 때문에 實제로 交易이 불가능한 品目이 多數 存在하는바, 實效保護率은 이러한 非交易財의 處理에 따라 Corden方法과 Balassa方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Corden方法에서는 中間財로 投入된 非交易財로 그 最終生產品과 동일한 實效保護率을 받는 것으로 假定하는 반면, Balassa方法에서는 中間財로 投入된 非交易財의 實效保護率은 零으로 假定한다⁹⁾. 이상과 같은 假定下에서 本研究에서는 1978年度 產業別 名目保護率과 392個部門으로 分類된 1975年度 韓國銀行 產業聯關表를 依용하여 實效保護率을 推定하였는데 이 때에 사용된 推定方程式은 다음과 같은 部分均衡模型으로 表示할 수 있다¹⁰⁾. 즉,

$$EP^B = T[I - A_{ij} - R_{in}A_{nj}][I - \widehat{A_{ij}} - \widehat{A_{nj}}]^{-1} \quad \dots \dots \dots (1)$$

$$EP^C = T[I - A_{ij} - R_{in}A_{nj}][I - \widehat{A_{ij}} - \widehat{A_{nj}} + \widehat{R_{in}A_{nj}}]^{-1} \quad \dots \dots \dots (2)$$

단, $EP^B, EP^C = 318$ 交易部門에 대한 Balassa와 Corden方式에 의한 實效保護率을 각각 列「백터」로 表示한 것.

$T : [T_1, T_2, \dots, T_{318}]$ 즉, 318 交易部門의 名目保護率을 列「백터」로 表示한 것.

$A_{ij} : 318$ 交易部門 $j (j=1, 2, \dots, 318)$ 生產에 대한 交易部門 $i (i=1, 2, \dots, 318)$ 의 投入係數를 國際價格基準의 行列式으로 表示한 것¹¹⁾.

$R_{in} : 非交易部門n (n=318, \dots, 392)$ 에 대한 交易部門 $i (i=1, 2, \dots, 318)$ 의 直·間接 總投人係數의 行列.

A_{nj} : 交易部門 j 에 대한 非交易部門 n 의 投入係數 行列.

R_{wn} : 非交易部門 n 의 生產比重 直·間接 總附加價值의 比率을 對角行列 (diagnol matrix)로 表示한 것.

1° : 모든 要素가 1인 列「빽터」.

$\widehat{1^{\circ} A_{ij}}$: $1^{\circ} A_{ij}$ 의 列「빽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widehat{1^{\circ} A_{nj}}$: $1^{\circ} A_{nj}$ 의 列「빽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widehat{1^{\circ} R_{wn}A_{nj}}$: $1^{\circ} R_{wn}A_{nj}$ 의 列「빽터」를 對角行列로 表示한 것.

2. 輸出에 대한 誘因率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에 相應하는 概念으로서 소위 實效補助率의 概念에 의해서 推定되었다.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諸輸出支援政策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補助를 總體的으로 計量化하여 이를 輸出生產에서 發生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에 대한 百分率로 表示한 것이다. 즉, 이 것을 式으로 表示하면,

$$ES^B = S[I - \widehat{1^{\circ} A_{ij}} - \widehat{1^{\circ} A_{nj}}]^{-1} \quad \dots \dots \dots (3)$$

$$ES^C = S[I - \widehat{1^{\circ} A_{ij}} - \widehat{1^{\circ} A_{nj}} + \widehat{1^{\circ} R_{wn}A_{nj}}]^{-1} \quad \dots \dots \dots (4)$$

단, ER^B , ES^C : 318 交易部門에 대한 Balassa 및 Corden 方式에 의한 輸出

12) 1960年代 이후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 특히 輸入代替와 輸出誘因政策에 대한 歷史的概要에 대해서는 Nam(1980) 참조.

13) 短期輸出支援金融中 輸出金融은 원래 生產集荷資金, 完製品購買資金, 原資材購買資金 및 原資材輸入資金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972年 3月에 統合하여 輸出金融으로 改稱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財務部(1979) 참조.

補助率의 列「빽터」.

S : 318 交易部門에 대한 輸出補助額의 列「빽터」.

위의 式 (3)과 (4)에서 사용된 S 는 輸出生產에 賦與된 모든 支援政策 즉, 金融 및 稅制上의 支援, 原資材 輸入에 대한 減耗許容, 輸出入「링크」制, 公共料金割引 등으로부터 發生하는 모든 補助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이들 支援策中 그 比重으로 보아 가장 重要한 支援政策인 金融 및 稅制上의 補助만을 計量化가 試圖되었으며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단히 言及하고자 한다¹²⁾.

가. 金融上의 補助

우리 나라의 輸出支援金融은 1960年 中半이후 이룩한 急速한 輸出伸張과 더불어 계속 量的으로 擴大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種類도 상당히 複雜化되었다. <表 1>은 1966~78年間 우리 나라 輸出支援金融의 體制와 融資實績을 要約한 것이다. <表 1>에서 短期輸出支援金融이라 함은 그 融資期間이 1年 이내의 것을,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그 이상의 것을 意味한다¹³⁾. 輸出支援金融은 1966年 60億원에 불과 했으나 1966~78年間 年平均 名目輸出增加率 39%를 훨씬 上廻하는 67%씩 增加하여 1978年에는 무려 1兆 6,597億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民間與信總額에 대한 總輸出支援金融의 比重이 1966年的 5.1%에서 1978年에는 20.5%로 增加하였다. 또한 同期間에 總輸出支援金融中 長期輸出支援金融의 比率이 20%에서 47%로 크게 提高되어 그동안 施設資金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1〉 輸出支援金融 融資實態

(단위 : 10億원)

分類	年 度	1966	1970	1974	1976	1978
1. 短期輸出支援金融		4.8	57.3	359.5	582.5	883.5
輸出金融		3.6	48.8	267.9	457.0	836.7
外貨表示供給金融		1.2	4.5	50.2	75.7	18.3
農水產物輸出準備資金		—	4.0	41.4	49.8	28.5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		1.2	25.6	247.0	311.3	776.2
延拂輸出支援資金		—	—	4.3	56.2	164.6
外貨貸出		—	21.4	166.6	179.0	556.1
中小企業輸出產業化資金		1.2	4.2	9.8	9.1	15.9
輸出產業設備金融		—	—	66.3	67.0	39.6
3. 合計 (1+2)		6.0	82.9	606.5	893.8	1,659.7
4. 民間部門國內與信		118.8	919.4	2,862.5	4,381.4	8,082.5
5. 總輸出額(百萬달러)		250.3	882.2	4,515.1	7,814.6	12,710.6
2/3 (%)		19.7	30.9	40.7	34.8	46.8
3/4 (%)		5.1	9.0	21.2	20.4	20.5
3/5 (원)		24.0	94.0	134.3	114.4	130.6

資料：韓國銀行

〈表 2〉 輸出支援金融의 金利 및 利子補助金

(단위 : %, 10億원)

	1966	1970	1974	1976	1978
1. 短期輸出支援金融					
輸出金融	6.5	6.0	8.9	7.4	9.0
外貨表示供給金融	6.5	6.0	8.9	7.4	9.0
農水產物輸出準備資金	—	8.8	6.0	7.4	9.0
2. 中長期輸出支援金融					
延拂輸出支援資金	—	8.0	8.2	7.4	7.0
外貨貸出	—	9.0	12.2	10.1	13.7
中小企業輸出產業化資金	12.4	12.0	10.0	10.0	16.0
輸出產業設備金融	—	—	12.0	12.8	16.0
3. 加重平均金利 ¹⁾	7.7	7.2	10.0	8.4	10.6
4. 一般貸出金利	26.4	24.0	15.5	18.0	19.0
5. 總利子補助金 ²⁾	4.1	13.9	32.3	88.5	139.5

註: 1) 當該年의 融資實績을 加重值로 하였음.

2) 〈表 1〉의 融資實績에 (4-3)을 乘算하여 求했음.

資料：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利子補助額은 輸出支援金融 年末殘額에 輸出優待金利와 一般貸出金利間의 차이를 乘算하여 推定하였으며, <表2>는 1966~78年間 輸出優待金利와 一般貸出金利 및 總利子補助額을 보여 준다. 즉, 1978年度 現在 一般貸出金利는 19%이었던 것에 비해 加重平均된 輸出優待金利는 10.6%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總利子補助額도 1966年 41億원인 데 비해 1978年度에는 무려 1,395億원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韓國에서는 一般貸出金利 역시 自由市場金利에 複せ 未達하는 一種의 優待金利로 看做할 수 있어, 本稿에서 推定한 利子補助額은 상당히 過小推定되었을 可能성이 높다. 즉, 1978年度 現在 私債市場金利는 42%, 그리고 製造業의 1972~75年間 年平均 資本의 收益性은 43%이었음이 報告된 바 있어 만약 自由市場金利를 一般貸出金利와 私債市場金利의 中間値인 30% 정도로 假定할 경우 위와 같이 推定된 利子補助額은 100% 정도 過小推定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¹⁴⁾.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產業別 利子補助額의 推定은 輸出支援金融의 產業別 配分資料가 없

14) 私債利子率과 製造業의 資本收益에 대한 資料는 각각 Cole and Park(1979, p.161) 및 Hong(1979, pp.176 ~205) 참조.

15) 輸出金融 및 外換表示供給金融은 “外貨收入의 美貨 「달러」當 x원” 또는 “輸出을 위한 所要資金의 y%”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農水產物輸出支援資金은 양참, 해배, 물 등 13個品目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延拂輸出金融은 船舶, 產業設備, 鐵道車輛, 機械類 등을 그 對象品目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韓國貿易協會의 輸出支援制度(1978), 財務部의 韓國의 金融政策(1979) 참조.

16) 仔細한 내용은 韓國貿易協會의『貿易便覽』(1979) 參照.

17) 海外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은 海外投資額의 10%, 그리고 價格變動準備金의 損金算入은 年末 現在 在庫資產額의 5%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資料不足은 물론 額數面에서도 相對적으로 微少한 것으로 推測되어 本研究에서는 計量에서 除外되었다.

어 다음과 같은 間接的인 方法에 의존하였다. 즉, 輸出支援金融中 輸出金融과 外貨表示供給金融의 產業別 配分은 當該年의 各產業의 輸出額에 比例한다고 假定하였다. 그리고 農水產物輸出準備資金과 延拂輸出金融은 各各 融資對象에 包含된 產業들의 輸出額에 比例하여 配分하였으며 그 의의 中長期輸出支援金融은 個別產業의 輸出額에 比例한다고 假定하였다¹⁵⁾.

나. 稅制上의 補助

輸出產業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은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減免, 間接稅免除, 그리고 諸直接稅 減免을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嚴密한 意味에서 볼 때 關稅減免과 間接稅減免은 自由貿易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純粹補助라고 할 수 없으므로 本研究에서는 直接稅減免에 의한 補助를 稅制上의 補助로 看做하였다.

政府는 1973年 外貨獲得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한 法人稅 혹은 所得稅의 直接減免制度를 廢止하고 그 대신 海外市場開拓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그리고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와 加速減價償却制度를 導入하였으며, 1976年에는 價格變動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를 新設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¹⁶⁾.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上記 支援策中 加速減價償却 그리고 海外市場開拓準備金과 輸出損失準備金에 의한 產業別 補助額만을 다음과 같은 間接的인 方法에 의해서 推定하였다¹⁷⁾. 즉, 加速減價償却에 의한 補助額은 1975年度 產業聯關表의 一般償却에 의한 資本消耗充當金을 우선 1978年度 產出額基準으로 擴大推定한 후 產業別로 加速減價償却의 規定에 따라 算出하였다.

다¹⁸⁾. 또한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損金에 의한 補助額은 모든 企業이 法定許容限度額인 當該 年度 輸出額의 1%를 완전히 海外市場開拓에 消盡한 것으로 假定하여 算出했으며 그리고 輸出損失準備金의 損金은 法定許容限度額이 輸出의 1%이지만 輸出業者가 實제로 輸出에 의한 損失이 없는 것으로 假定하여 그 損金의 償還時까지 發生하는 利子額을 現在價值로 換算하여 推定하였다¹⁹⁾.

<表 3>은 이 상에서 說明한 方法에 의해서 1978年度 現在 輸出產業에 賦與된 金融 및 稅制上의 輸出補助額을 推定하여 11個 大分額 產業別로 提示한 것이다. 同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8年度 現在 全產業에 賦與된 輸出補助額은 3,260億원에 달하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그중 43%인 1,395億원이 金融上의 補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金融上의 補助額은 自由市場金利 대신 一般貸出金利와 輸出支援金融金利間의 差를 基準으로 하여 算出한 것이라므로 상당히 過少推定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III. 相對的 實效誘因率 構造와 評價

前節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한 產業에 대한 實效誘因率을 測定한다는 것은 自由貿易條件下에서 存在할 生產者의 附加價值에 諸產業誘因政策이 어느 정도의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計量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計測된 實效誘因率의 經濟的 意味를 明

<表 3> 1978年度 輸出補助金 現況

(단위 : 百萬원)

	利 補 助 金 (1)	直 接 稅 補 助 金			輸 補 助 金 (1)+(2)	(1) / (2) (%)
		特別加 速 償 却	海 外 市 場 開 拓 準 備 金	輸 出 損 失 準 備 金 (2)		
1. 農林水產業	7,068.2	21,366.1	3,253.9	1,303.5	25,923.5	32,991.7
2. 加工食品	4,052.2	1,567.4	1,865.5	747.3	4,180.2	8,232.4
3. 飲料 및 煙草	327.7	308.7	150.9	60.4	520.0	847.7
4. 鑄業 및 에너지	774.3	1,860.6	356.5	142.8	2,359.9	3,134.1
5. 建築材料	1,920.5	4,186.7	884.2	354.2	5,425.1	7,345.6
6-A. 第1中間財	12,419.4	9,284.7	5,717.5	2,290.3	17,292.5	29,711.9
6-B. 第2中間財	27,659.0	25,431.6	12,527.7	5,018.4	42,977.7	70,636.7
7. 非耐久消費財	43,227.9	22,804.5	19,900.7	7,971.9	50,677.1	93,905.0
8. 耐久消費財	22,713.3	12,363.4	7,331.2	2,936.8	22,631.4	45,344.7
9. 機械類	5,074.7	3,033.5	1,537.2	615.8	5,186.5	10,261.2
10. 輸送裝備	14,292.1	3,144.9	4,329.2	1,734.2	9,208.3	23,500.4
全產業總計	139,529.4	105,352.1	57,854.4	23,175.4	186,381.9	325,911.3

18) 加速減價償却은 그 規定에 따라 輸出額의 總收入額의 50%를 超過하는 경우 一般償却의 30%, 그리고 50%에 未達한 경우에는(一般償却×0.3×輸出額/總收入額)×2의 式에 의해서 算出되었다. 仔細한 稅에 대해서는 玄岩社(1978) 參照.

19) 損失이 없는 경우 그 損金을 1年据置 3年均等分割償還原則에 의해서 그 補助額을 다음과 같은 式에 의해 算出하였다.

$$\text{補助額} = \frac{L \cdot r}{1+r} + \frac{L \cdot r}{(1+r)^2} + \frac{(2/3)L \cdot r}{(1+r)^3} + \frac{(1/3)L \cdot r}{(1+r)^4}$$

단, L =準備金의 損金算入額, r =當該年の 利子率

確하게 把握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어떤 理想的인 條件下에서 어느 特定產業이 正의 實效誘因率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超過利潤(economic profit)의 發生, 非效率的 生產에 대한 補償, 혹은 이 두 가지의 混合을 意味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든 產業의 生產函數가 國家間에 동일하다고 假定할 때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產業에 대해 正의 實效誘因率을 賦與한다는 것은 곧 그 產業에 超過利潤을 發生케 할 것이다며 이것은 또한 어느 정도 그 產業으로의 產業誘因效果를 誘發시키는 指標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現在의 產業誘因體制가 모든 產業이 長期均衡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生成・變遷되어 온 하나의 歷史的 產物이라고 假定한다면 現在 各 產業에 賦與되고 있는 實效誘因率은 各 產業의 生產效率性에 따라 適正利潤(normal profit)이 保障될 수 있도록 保護(혹은 非保護)를 해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때에 正의 實效誘因率은 그 生產에 投入된 國內資源費用(domestic resources cost)이 國際價格基準 生產額보다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²⁰⁾.

또한 여기서 強調해야 할 것은 本研究에서 推定된 產業別 혹은 販賣市場別 實效誘因率은 그 絶對值보다는 어디까지나 產業間 혹은 販賣市場間의 相對的 側面에서 評價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輸入代替 혹은 輸出產業과 같은 交易部門에 대한 實效誘因率이 換率의 過小 혹은 過大評價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

20) 따라서 本研究에서 計劃된 實效誘因率의 經濟的 意味를 正確히 把握하려면 各 產業의 實效誘因率에 相應하는 超過利潤의 發生與否 그리고 生產函數의 國際比較 등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21) 1978年度 主要 產業別 推定結果는 1968年度 推定值과 對比하여 <附表 1>에 提示되고 있다.

이다. 즉, 換率의 過小 혹은 過大評價는 各各 交易部門의 非交易部門에 대한 相對的 保護(protection) 혹은 非保護(deprotection)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本研究에서 推定된 實效誘因率은 그 經濟的 意味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產業間 혹은 販賣市場間에 實效誘因率의 隔差가 存在한다는 것은 必然的으로 國內・國際價格의 歪曲에 의한 經濟的 福祉損失은 물론 非效率的 生產의 補償에 따르는 資源浪費 등을 招來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產業別 實效誘因率推定結果를 檢討해보자 한다.

1. 輸入代替(國內販賣)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構造

<表 4>는 1978年度 現在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 그리고 全體販賣에 대한 平均 實效誘因率의 318個 產業別 推定結果를 11個 大分類 產業群으로 合成하여 要約한 것이다²¹⁾. 여기서 產業群別 實效保護率과 實效補助率의 加重平均值 算出에는 1978年度 現在 個別 產業의 國內販賣와 輸出을 위한 生產에서 誘發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가 각각 加重值로 사용되었으며, 平均 實效保護率의 算出에는 國內販賣와 輸出의 附加價值 比率이 加重值로 사용되었다.

<表 4>에서 最大 關心事는 물론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體制가 과연 輸入代替와 輸出產業中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 偏奇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全 產業을 平均的으로 볼 때, Corden 方式

에 의한 實效誘因率이 輸出은 16%인 데 비해 國內販賣는 24%로 나타나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 產業誘因政策이 대체로 輸出보다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全產業을 1次產業과 製造業으로 分離하여 相對的 誘因率 構造를 살펴보면 완전히 對照의인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1次產業에서는 輸出 對 國內販賣의 相對的 實效誘因率이 14% 對 59%로 輸入代替에 크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반면, 製造業에 있어서는 4% 對 16%로 輸出에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全產業의 平均誘因率에 의해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이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다고 判斷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結論임을 알 수 있다. 즉, 1次產業에서

는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保護로 交易減少를, 그리고 1978年度 우리 나라 總輸出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製造業에서는 輸出促進으로 交易擴大를 각各 招來하였을 것인바, 結果的으로 볼 때 輸入代替效果가 支配的으로 作用하여 우리 나라의 交易集約度가 [圖 1]에서 提示한 바 있는 最適貿易集約度 T^* 의 左側에 위치할 것이지 혹은 輸出促進效果가 支配的으로 作用하여 T^* 의 右側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게 判斷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우기 個別產業群의 相對誘因率 構造를 보면, 農林水產業, 飲料 및 煙草, 非耐久性 消費財, 耐久性 消費財, 그리고 機械類와 輸送裝備部門에서는 國內市場이 輸出보다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반면, 鎳業 및 에너지, 加工食品, 第1中間財, 第2中間財, 그리고 建設資材部門

〈表 4〉 產業別 輸出 및 國內販賣에 대한 相對的 實效誘因率 構造(1978)

(단위 : %)

	輸出 實效補助率		國內販賣 實效保護率		全體販賣 實效誘因率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1. 農林水產業	16.6	14.9	77.1	73.4	72.7	69.1
4. 鎳業 및 에너지	12.1	10.8	-25.7	-23.8	-23.6	-21.8
第1次產業合計	16.1	14.4	61.9	58.7	58.6	55.5
2. 加工食品	51.2	18.1	-29.4	-16.0	-21.0	-12.4
3. 飲料 및 煙草	18.2	13.2	28.0	22.8	27.9	22.6
5. 建設材 料	20.5	15.7	-15.0	-11.9	-10.3	-8.3
6-A. 第1中間財產業	22.8	16.9	-37.9	-27.4	-31.5	-22.7
6-B. 第2中間財產業	30.7	19.8	7.9	5.3	13.0	8.6
7. 非耐久消費財	17.9	12.7	31.5	21.9	24.3	17.0
8. 耐久消費財	42.5	25.3	131.2	81.0	85.5	52.3
9. 機械類	29.7	19.5	47.4	33.2	44.2	30.7
10. 輸送裝備	19.4	14.4	135.4	73.8	84.3	4.77
製造業合計	24.1	16.4	5.3	3.7	10.1	6.9
全產業總計	22.8	16.2	30.6	24.1	28.9	22.4
第1次產業(加工食品包含)	18.4	15.0	55.5	50.0	52.5	47.2
製造業(飲料 및 煙草除外)	24.1	16.4	2.7	1.9	8.3	5.7
製造業(飲料煙草外 加工食品除外)	23.7	16.4	5.1	3.5	10.3	7.1
全產業(飲料 및 煙草除外)	22.8	16.2	30.8	24.2	29.0	22.4

에서는 輸出이 國內市場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保護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個別產業群들에 대한 相對的 實效誘因率이 각기 交易減少 혹은 交易擴大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分析하기 위해서는 各產業의 誘因率에 대한 供給彈性值의 分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本研究의 範圍를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表 3>에서 提示된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由로 상당히 過小推定된 것임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첫째, 輸出支援金融에 의한 利子補助額推定에 있어서 一般貸出과 輸出支援金融間의 金利差 代身에 自由市場金利(30%로 假定)와 輸出支援金利間의 差를 적용할 경우 利子補助額이 100% 정도 增加한다는 것은 이미 2節에서 指摘한 바 있다. 만약에 利子補助額이 100% 增加한다면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의 全產業 平均은 16%에서 23%로 上昇하여 國內販賣에 대한 全產業 平均 實效保護率 24%에 거의 接近한다²²⁾. 둘째,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產業에 있어서 輸出을 補助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實效保護와 獨寡占形態의 市場構造를 許容하는 一種의

22) 利子補助額을 一般貸出金利 19%와 自由市場金利 30%(假定)를 基準으로 했을 때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의 比較

	一般貸出 金利基準		自由市場 金利基準	
	Balassa	Corden	Balassa	Corden
第1次 產業	16.1	14.4	19.6	17.5
製造業	24.1	16.4	35.0	23.9
全 產 業	22.8	16.2	32.6	23.1

23) 특히 國내販賣에 대해서 鐵業 및 에너지(-24%), 食品加工(-16%), 建設資材(-12%), 그리고 第1中間財(-27%) 產業에서 「負」의 實效保護率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1978年度에 강력하게 施行된 國내價格規制政策에 基因한 바가 크다. Nam(1980) 참조.

「링크」(Link) 셔스템을 사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主要輸出品目인 電子電氣製品과 輸出의 初期段階에 있는 自動車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째, 輸出促進을 위한 政府行政能力의 動員, 情報提供, 隘路事項의迅速한 處理 등과 같은 갖가지 非公式的인 政府支援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支援事項의 實質的 重要性을 計量化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國內販賣에 비해 輸出에 상당히 有利하게 사용되어온 支援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諸支援事項을考慮한다면 1978年度 現在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은 대체로 輸入代替보다는 오히려 輸出에 다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물론 이때에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名目保護率에 의한 國내市場保護를 반영할 뿐 輸入代替를 目的으로 하는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支援 등을 전혀 考慮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表 4>에 提示된 產業別 實效誘因率構造를 보면, 國내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第1中間產業의 -27%에서 輸送裝備產業의 74%까지 產業間에 상당히 큰 偏差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鐵業 및 에너지產業의 11%에서 耐久性消費財產業의 25%까지 비교적 均等한 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²³⁾. 이러한 結果는 輸出支援政策이 모든 產業에 비교적 中立的으로 適用된 反面, 國내市場保護政策은 產業間에 매우 差等的으로 適用되어 이에 따른 相對的 經濟費用(economic costs)이 훨씬 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78年度 現在 國내市場에서 高率의 實效保護率을 받고 있는 個別產業으로는 家庭用電子製品(366%), 合成纖維製品(266%), 化粧

品 및 齒齒(110%), 自動車(97%), 米穀(81%), 蓄產 및 養蠶(66%) 등 農產物과 消費財產業製品이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심한 負의 實效保護率을 받고 있는 產業으로는 「타이어」(-78%), 鋼管(-65%), 合板(-66%), 編絲(-56%), 시멘트(-41%) 그리고 無煙炭(-47%) 등 에너지 및 中間素材產業이主流를 이루고 있다²⁴⁾.

2. 製造業의 貿易類型別 誘因率 構造

지금까지는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誘因率을 各個別產業의 國內販賣와 輸出에 賦與된 誘因率을 중심으로 檢討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時點에서 個別產業을 대충 그 輸入 및 輸出比率에 따라 몇 가지 貿易類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 때에 各 貿易類型에 賦與된 平均誘因率構造를 檢討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表 5>는 製造業部門에 있어서 諸產業誘因政策의 效果를 貿易類型別로 平均하여 要約한 것이다. 同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있는 事實들을 觀察할 수 있다. 첫째, 1978 年度 現在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은 그 法定關稅率이 각각 47%와 51%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競爭產業의 25%와 33%에 비해, 高率의 關稅에 의한 保護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實제로 名目保護率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反對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즉, 輸出產業 및 非競爭輸入產業의 名目保護率이 각각 4%와 5%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21%와 1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記錄하

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1978年度 現在 우리나라의 關稅構造가 輸出產業 및 非競爭輸入產業中 상당수 品目에서 輸入禁止의 性格을 띠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로, 國內市場에 대한 實效保護率 역시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이 각각 -1%와 -13%로 가장 낮은 반면,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實效保護率은 각각 35%와 26%로서 輸出에

〈表 5〉 製造業의 貿易類型別 誘因率構造 : 1978
(단위 : %)

	X ¹⁾	IC ¹⁾	NIC ¹⁾	XIC ¹⁾	全製造業平均
國內販賣					
法定關稅率	47.4	25.4	50.8	33.1	41.4
名目關稅率	3.6	20.8	5.4	15.0	10.0
實效保護率	-0.5	35.2	-12.8	26.2	3.7
輸出					
實效補助率	15.6	23.2	13.9	17.2	16.4
全體販賣					
實效誘因率	6.3	34.7	-12.4	22.1	6.9

註: 1) 貿易類型의 定義는 Westphal and Kim(1977)의 方法에 따른 것이다. 즉,

輸出產業(X) : 國內總產出額中 輸出分이 10%以上.

輸入競爭產業(IC) : 國內總供給額中 輸入分이 10%以上.

輸入非競爭產業(NIC) : 輸出產業도 아니며 또 한 國內總供給額中 輸入分이 10% 미만.

輸出入競爭產業(XIC) : 輸出 및 輸入分이 모두 10%를 超過하는 것이다.

또한, <附表 1>에서 제시된 主要產業을 貿易類型別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즉,

輸出產業 : 「시멘트」, 編絲, 合板, 線織物, 「타이어」 및 「튜브」, 電線 및 「케이블」, 合成樹脂製品, 베리아스製品, 衣服 및 裝飾品, 고무靴類, 貴金屬製品.

輸入競爭產業 : 調味料 및 動食物性油脂, 「合成纖維 및 化學纖維」, 유리製品, 銑鐵, 製鋼, 洋紙, 無機基礎化學製品, 醫藥品, 原動機, 工作機械, 自動車.

輸入非競爭產業 : 酵農品, 清涼飲料, 煙草, 粘土 및 「콘크리트」製品, 煤炭, 「아세트」炭, 化妝品 및 齒齒, 家庭用電氣器機.

輸出入競爭產業 : 유리製品, 毛纖物, 合成纖維織物, 鐵鋼壓延製品, 鋼管, 非金屬 1次製品, 玩具 및 運動用品, 家庭用電子製品, 電子部品, 纖維機械, 一般產業用機械, 發電機 및 發動機, 送配電器機, 電子通信器機, 鋼鐵製船舶, 鐵道車輛.

24) 主要產業別 實效誘因率構造는 <附表 1> 참조.

대한 實效補助率을 훨씬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輸出入競爭產業의 實效保護率이 높은 것은 合成纖維織物, 家電製品, 그 밖에 機械類 및 鐵道車輛等의 產業에서 輸出擴大에 따른 不利를 國內販賣에 대한 保護로 补償하려는 政策과 聯關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세째로,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은 比較的 모든 產業에 重立的으로 適用되었으므로 輸出과 國內販賣에 대한 貿易類型別 平均 實效誘因率은 대체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輸出 產業과 非競爭輸入 產業의 實效誘因率은 각각 6%와 -12%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 產業의 35%와 22%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만약에 產業間의 實效誘因率構造가 어느 정도 「리카디안」(Ricardian) 意味에서의 比較優位를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다면, 1978年度 現在 韓國에서는 輸出 產業과 非競爭輸入 產業의 生產效率이 높은 반면에,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 產業의 生產效率은 相對的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는 상당한 注意를 要한다고 하겠다.

IV. 要約 및 結論

過去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 經驗에 비추어 볼 때, 輸出指向의 成長政策이 輸入代替를 통한 成長政策보다 相對的으로 優越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立證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輸出指向政策의 相對的 優越性

25) 主要產業의 貿易類型分類 및 誘因率構造는 〈附表 1〉 참조.

은 어디까지나 開發途上國이 自由貿易體制로 接近하는 過程에 있을 때 그 妥當性을 認定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지나친 輸出促進에 의한 過度한 交易擴大는 輸入代替政策에 의한 交易減少와 마찬가지로 經濟福祉의 損失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1970年代의 韓國의 產業誘因政策은 대체로 輸出促進과 輸入代替의 誘因策을 同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複合的으로 個別 產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把握해 보는 것은 상당히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本研究의 主目的은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諸 產業誘因策이 輸入代替와 輸出에 相對的으로 미치는 영향을 計測評價하는데 두었다. 특히 本研究에서 推定한 輸入代替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530餘個 品目에 걸쳐 試圖된 國內·國際價格의 直接比較資料를 土臺로 算出하였으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輸出支援金融과 租稅減免에 의한 補助額을 計量化하여 算出하였다. 또한 產業別 國內販賣 및 輸出에 대한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는 1975年度 韓國銀行의 產業聯關表를 사용하여 算出하였다.

本研究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1978年度 現在 韓國의 產業誘因政策이 과연 輸入代替와 輸出中 어느 쪽에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明確한 結論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判明되었다. 즉, 1978年度 現在 全 產業 實效誘因率은 國內販賣가 24%인데 비해 輸出은 16%로 推定되었으나, 輸出補助額의 算出에 있어서 좀더 現實的인 利子補助額 推定結果를 사용할 경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23%로 上昇하여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더욱이 韓國에서는 輸出 產業의 初期 輸出擴大에서 오는 不利를

國內市場에 대한 높은 保護 및 獨寡占의 許容을 통해 補償하는 政策을 종종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莫大한 政府 行政力이 輸出促進에 動員되었던 點 등을 考慮해 볼 때 1978年度 現在 韓國의 產業誘因政策은 대체로 輸入代替보다 輸出에 다소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지 않았을까 推測된다. 그러나 輸入代替와 輸出에 대한 相對的 誘因率 構造는 個別產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바, 특히 農業, 輸送裝備, 耐久性 消費財 등의 部門에서는 輸入代替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반면, 鑄業 및 에너지, 建設資材, 그리고 中間素材 部門에서는 輸出에 相對的으로 有利하게 偏奇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產業別 相對的 誘因率 構造는 주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이 產業間에 상당히 큰 隔差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비교적 均等하게 分布되어 있는事實에 크게 基因한다. 즉 國내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第1 中間財產業의 -27%에서 農業 및 輸送裝備產業의 약 74%까지 큰 隔差를 보여주고 있으며 輸出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鑄業 및 에너지產業의 11%에서 耐久性 消費財產業의 25%까지 비교적 均等한 分布를 보여준다. 따라서 過去 우리 나라의 產業誘因政策은 輸出支援政策에 의해서보다는 國내市場保護政策에

의해서 훨씬 큰 國내消費 및 生產「폐단」의 歪曲과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였을 可能性이 높으며, 이의 改善에 의해서 資源의 生產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餘地도 그만큼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注目하여야 할 事實은 1978年度 現在 全產業을 平均的으로 볼 때 輸入代替와 輸出 등 交易部門이 모두 비슷한 수준인 24% 정도의 實效誘因率을 받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適切한 換率政策의 運營으로 現行產業支援體制는大幅 單純化 내지는縮小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韓國產業의 貿易類型別 平均 實效誘因率 推定結果에 의하면 1978年度 現在 韓國의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의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誘因率은 각각 -1%와 -13%로서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35%와 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國내販賣와 輸出에 대한 平均 實效誘因率도 이와 비슷한 趨勢를 보여준다. 따라서 產業間의 實效誘因率 構造가 어느 정도 「리카디안」(Ricardian) 意味에서의 比較優位를 反映한다면, 1978年度 現在 韓國에서는 輸入競爭 및 輸出入競爭產業의 生產效率이 輸出產業과 非競爭輸入產業에서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는 상당한 注意를 要한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南宗鉉, 「韓國의 貿易政策과 產業保護構造」,
『韓國開發研究』, 여름호, KDI, 1980.
貿易協會, 『輸出支援制度』, 1978.
_____, 『貿易便覽』, 1979.

財務部, 『韓國의 金融政策』, 1979.
玄岩社, 『稅法』, 1978.
Balassa, B., e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 Johns Hopkins Press, 1971.
- Balassa, B.,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forthcoming.
- Balassa, B. and D.M. Schydlowsky, "Indicators of Protection and of Other Incentive Measures," in N.D. Ruggles, ed., *The Role of the Computer in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Latin Americ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4, pp.331~346.
- Bhagwati, J.,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Ballinger, 1978.
- Bhagwati, J. and A.O. Krueger, "Exchange Control, Liberalization Attempts,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3, May 1973, pp.419 ~427.
- Cole, D.C., and Y.C. Park,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1945~7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Kim, K.S., *Deflation of Korea Input-Output Data into 1968 Constant Pric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 Krueger, A.O., "Export-Led Industrial Growth Reconsider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 Little, I., T. Scitovsky, and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Nam, C.H.,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 Westphal, Larry E. and K.S.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ugust, 1977.

〈附表 1〉 主要產業別 名目 및 實效誘因率¹⁾(1968年과 1978年)

(단위 : %)

產業分類 ²⁾ (152部門)	貿易類型	國內販賣 ⁴⁾				輸出 ⁴⁾	全體販賣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1968 ³⁾	1978	1968 ³⁾	1978	1968 ³⁾	1978	
I. 農林水產業								
1. 米 谷	N I C	N I C	14.2	66.9	14.5	81.1	5.2	80.7
11. 畜產 奶養 蠶	N I C	I C	0.0	47.2	-12.9	66.2	8.6	65.4
13. 林產物, 肉林, 其他 林產物	N I C	N I C	5.7	4.7	4.4	4.0	4.7	4.0
14. 水產漁獲 呉養殖業	N I C	X	0.0	0.8	-4.2	-1.7	21.7	4.7
II. 加工食品								
16. 酪農品	I C	N I C	17.4	27.1	22.7	-5.9	9.1	-5.8
25. 調味料 動植物性 油脂	N I C	I C	11.1	23.4	-18.3	-34.9	9.3	-33.5
III. 飲料 呀煙草								
29. 清涼飲料	N I C	N I C	3.2	0.0	-14.5	-13.9	13.7	-11.8
30. 煙草	N I C	N I C	-13.5	57.2	-40.8	157.7	10.8	157.5
IV. 鑛產物 및 에너지								
31. 無煙炭, 土炭, 褐炭	N I C	N I C	10.0	-40.0	4.5	-46.9	9.9	-46.9
33. 重石鑛石	X	X	0.0	0.0	-5.8	-0.9	12.0	4.7
V. 建設資材								
45. 시멘트	N I C	X	3.1	-20.1	-12.8	-40.8	16.4	-30.5
46. 粘土 및 콘크리트製品	N I C	N I C	7.1	4.6	-1.4	11.9	13.7	12.0
VI - A. 中間財生產(I)								
48. 綿絲	N I C	X	0.0	-10.4	-15.0	-55.6	19.2	-40.3
55. 合板	X	X	0.0	-15.7	-82.4	-65.8	15.5	-11.9
57. 合成纖維 및 化學纖維	I C	I C	36.8	36.2	37.1	126.0	34.4	122.0
58. 石油製品	N I C	I C	-26.2	-3.0	-66.2	-24.6	20.0	-22.0
59. 煙炭·마세크炭	N I C	N I C	18.9	-51.2	27.6	-69.0	0.0	-69.0
61. 유리製品	I C	X I C	9.2	2.9	-4.9	2.1	10.9	3.0
62. 銑鐵	I C	I C	15.2	-2.0	28.9	14.9	13.7	14.9
63. 製鋼	N I C	I C	11.8	-0.8	-12.2	-3.1	7.7	-3.1
VI - B. 中間財生產(II)								
66. 綿織物	X	X	31.7	-10.6	169.5	-19.8	17.4	-14.3
68. 毛織物	X	X I C	47.7	54.0	15.3	139.9	19.8	121.5
71. 合成纖維織物	X I C	X I C	42.7	91.1	17.6	266.1	18.0	110.4
75. 洋紙	I C	I C	15.3	11.2	14.8	5.1	12.5	5.4
77. 타이어 및 튜브	N I C	X	0.0	-39.8	-44.3	-79.5	10.8	-39.1
79. 無機基礎化學製品	I C	I C	24.0	-16.0	22.1	-34.9	17.6	-33.0
91. 鐵鋼壓延品	I C	X I C	30.6	-10.8	138.7	-26.4	26.7	-18.3
92. 鋼管	I C	X I C	127.6	-33.6	-3,417.7	-64.5	14.8	-36.2
95. 非鐵金屬 1次製品	X I C	X I C	9.8	13.6	-17.7	18.7	11.9	17.1
100. 電線 및 케이블	I C	X	79.5	17.3	1,654.8	26.4	20.1	25.6
101. 合成樹脂製品	N I C	X	0.0	0.0	-31.1	-4.0	14.6	-0.8

產業分類 (152部門)	貿易類型		國內販賣				輸出	全體賣	
			名目保護率		實效保護率			實效補助率	實效誘因率
	1968	1978	1968	1978	1968	1978	1978	1978	1978
VII. 非耐久性消費財生產									
103. 배리야스製品	X	X	28.7	2.4	31.0	0.5	14.4	9.1	
104. 衣服 및 裝飾品	X	X	11.8	20.5	-24.7	28.0	13.2	18.2	
110. 歩 靴類	X	X	0.0	0.0	-42.8	-2.2	13.2	5.0	
111. 醫 藥 品	N I C	I C	4.5	40.0	-9.3	68.1	13.7	65.7	
113. 化 莊 品 및 齒 藥	N I C	N I C	22.7	46.0	16.1	110.0	14.5	109.8	
119. 貴 金 屬 製 品	N I C	X	61.1	0.0	88.3	-7.9	6.5	-5.6	
121. 玩 具 및 運 動 用 品	X I C	X I C	5.6	0.0	-14.3	-4.3	8.6	6.7	
VIII. 耐 久 消 費 財									
126. 家庭用電子製品	X I C	X I C	72.2	102.8	114.0	365.5	39.0	126.5	
127. 電 子 部 品	X I C	X I C	112.3	22.2	39.2	15.0	20.4	17.5	
128. 家庭用電機機器	I C	N I C	113.7	28.7	558.9	70.2	21.3	68.2	
IX. 機 械 類									
131. 原 動 機	I C	I C	20.7	21.3	3.8	38.0	15.7	36.4	
132. 工 作 機 械	I C	I C	4.5	9.7	-10.6	18.4	14.8	18.2	
136. 織 維 機 械	I C	X I C	0.6	18.2	-16.8	47.3	14.9	43.4	
138. 一 般 產 業 用 機 械	I C	X I C	9.4	12.6	-5.2	30.4	19.8	29.0	
142. 發 電 機 및 發 動 機	I C	X I C	20.1	18.6	28.5	34.6	17.0	32.6	
143. 送 配 電 機 器	X I C	X I C	89.0	7.8	225.2	12.2	17.5	13.2	
145. 電 子 通 信 機 器	I C	X I C	45.7	21.2	64.5	23.4	21.6	22.9	
X. 輸 送 用 機 械									
148. 鋼 鐵 製 船 艇	I C	X I C	16.5	0.0	4.5	-2.4	13.4	15.2	
150. 鐵 道 車 輛	I C	X I C	55.1	22.7	202.4	49.6	21.1	46.2	
151. 自 動 車	I C	I C	90.5	32.9	247.7	96.6	43.6	92.9	

註: 1) 本表에 提示된 產業分類는 Westphal and Kim(1977)의 1968年度 推定值과 對比가 可能하도록 1978年度 318個 部門에 걸쳐 推定된 諸誘因率을 152個 部門으로 統合한 것임.

2) 152個 產業部門中 本〈附表〉에서 主要產業으로 提示된 51個 產業은 可能한限 각 11個 大分類產業의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의 60% 以上 되도록 比重이 높은 것을 優先的으로 選擇한 것임 (단, 加工食品과 飲料 및 煙草部門은例外).

3) Westphal and Kim(1977), Table 2A and 2B. 參照.

4) 實效誘因率은 Corden 方式에 의해서 推定된 것임.